

2021년도 제3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0. 29.(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의결사항** ※ 안건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안건번호 제2021-150330호~15038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순번 1번~6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툰 (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60번,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 모두 가결처리함이 상당합니다.
- D 위원: 순번 1~ 60번의 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단,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족할 것임.
- E 위원: 순번 1번~60번 { ‘■■■■■’ 사이트의 ‘[중점](영화)툰 (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 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 함.

2021년 제3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9.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